

■ 법인세법 시행규칙[별지 제51호서식] <개정 2017. 3. 10.>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(4쪽 중 제1쪽)

사업 연도	· · · ~ · · ·	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구 분	① 요 건	② 검 토 내 용			③ 적합 여부	④ 적정 여부
		구분 업태별	기준 비율 코드	사 업 수입금액		
중 요 건	㉞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(01) ()업	(04)	(07)	(17) 적 합 (Y) 부적합 (N)	(26)
		(02) ()업	(05)	(08)		
		(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
		계				
중 요 건	㉞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 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 출 액 - 당 회사(10) () 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) 억원 이하 나. 자산총액(12) () 억원			(18) 적 합 (Y) 부적합 (N)	적 (Y)
	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닐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㉞의① 기준) 이내일 것				
기 요 건	㉞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닐 것 •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•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㉞의① 기준) 이내일 것			(19) 적 합 (Y) 부적합 (N)	부 (N)
		㉞ 사유발생 연도(13) () 년				
소 기 업	㉞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㉞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㉞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중소기업 업종(㉞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 요건(㉞)을 충족하는지 여부			(21) (Y), (N)	(27) 적 (Y) 부 (N)
		㉞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 ㉞ 매 출 액 - 당 회사(14) () 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) 억원 이하				

구분	① 요건	② 검토내용	③ 적합여부	④ 적정여부						
중견기업	⑩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(23) (Y), (N)	(28) 적 (Y) 부 (N)						
	⑩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닐 것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 	(24) (Y), (N)							
	⑩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법 제5조제1항)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)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: 3천억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660 831 1249 1021"> <thead> <tr> <th>직전 3년</th> <th>직전 2년</th> <th>직전 1년</th> <th>평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억원)</td> <td>(억원)</td> <td>(억원)</td> <td>(억원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직전 3년	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(억원)	(억원)	(억원)
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				
(억원)	(억원)	(억원)	(억원)							

회계사 명판 날인

* 제3장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
필요

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

법 인 명
사업자등록번호

(4쪽 중 제1쪽)

최근결산년도 기준

구분	요건	② 검 토 내 용			③ 합	④ 정	
		연도별 구분	기준비율 코드	사 업 수의금액	여부	여부	
⑩ 사업요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	01) ()업	(04)	(07)	적 합 (Y)	(26)	
		02) ()업	(05)	(08)			부적합 (N)
		03) 그 밖의 사업	(06)	(09)			
		계					
⑪ 규모요건	○ 아래 요건 ①,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봄)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-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	가. 매출액 - 당 회사(10) ()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1의 규모기준(11) ()억원 이하			적 합 (Y)	적 (Y)	
		나. 자산총액(12) ()억원			부적합 (N)		
⑫ 독립성요건	○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특정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·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대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(⑩의① 기준) 이내일 것 				적 합 (Y)	부 (N)
		○ 사유발생 연도(13) ()년				부적합 (N)	
⑬ 유예기간	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제2호,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				(20)	적 합 (Y)	
					부적합 (N)		
⑭ 소기업	⑭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	중소기업 업종(⑩)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, 독립성요건(⑫)을 충족하는지 여부			적 합 (Y), (N)	적 (Y)	
	⑭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"평균매출액등"은 "매출액"으로 본다) 이내일 것	○ 매출액 - 당 회사(14) ()억원 -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3의 규모기준(15) ()억원 이하			적 합 (Y), (N)		부 (N)

소기업 기준 필수 사항

구분	① 요건	② 검토내용				③ 적합여부	④ 적정여부
중견기업	㉞ 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	중소기업이 아니고, 중소기업 업종(㉞)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 여부				(23) (Y) (N)	
	㉟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하지 아닐 것 •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%이상을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(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) 				(24) (Y) (N)	(28) 적 (Y) 부 (N)
	㊱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다음의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것 ①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(법 제53제1항: 1천5백억원 미만(신규상장 중견기업에 한함)) ② 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(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3): 5천억원 미만 ③ 기타 중견기업 대상 세액공제: 3천만원 미만	직전 3년 과세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				(25) (Y) (N)	
	직전 3년	직전 2년	직전 1년	평균			
	(억원)	(억원)	(억원)	(억원)			

*회계사 또는 세무사 명판 날인이 없는 경우 해당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**소기업유형으로 신고하는 기업의 경우 소기업부분 붉은색 표기 된 부분이 누락된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.

***붉은색 표기가 된 부분은 필수 사항입니다.